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16 발의연월일: 2024. 11. 13.

발 의 자:이성권·배준영·신성범

김소희 • 이종욱 • 강대식

정연욱 • 조은희 • 우재준

고동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 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나, 이 중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만을 명시하고 있어 기부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, 또한 민간플랫폼이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도 권한 등을 새롭게 신설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, 제12조제2항, 제12조의2,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16조제2항 및 제3항, 제18조).

법률 제 호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"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"을 "제12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플랫폼을"로 한다.

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에"를 "제3항에"로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민간플랫폼의 연계 활용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플랫폼을 지정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에 따라 민간서비스와 결합하거나 민간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전자정 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연계하여 별도로 활용할 수 있다.

- 1. 제2조제2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
- 2.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
- 3.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
- 4.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홍보
- 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·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라 연계 활용되는 플랫폼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1.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·접수에 있어서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사항
- 2.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에 있어서 제9조에 따른 사항
- ③ 제1항에 따라 연계 활용되는 플랫폼의 운영자는 기부자의 개인 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계활용되는 플랫폼 운영 현황 및 플랫폼 운영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,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·접수 및 답례품 지급 현황 등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그 밖에 플랫폼 연계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.

제1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센터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업무·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플랫폼 운영자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·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사·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- 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플랫폼 운영자가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기부금의 접수 중 지,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한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플랫폼 운영자가 제15조제5항에 따라 기부금의 접수 중지 조치 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하며, 해당 조치를 받 은 민간플랫폼 운영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플랫폼으로 지정받은 자
 - 2.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
 - 3. 제15조제5항에 따른 시정 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8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	제8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		
및 상한액) ① 고향사랑 기부	및 상한액) ①		
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			
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			
거나, <u>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</u>	<u>제12조제4항에 따른 정보시</u>		
<u>템을</u> 통한 전자결제·신용카드	스템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		
•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	른 민간플랫폼을		
단체의 청사, 그 밖의 공개된			
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.		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		
제12조(제도의 홍보·연구 및 지	제12조(제도의 홍보・연구 및 지		
원) ① (생 략)	원) ①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		
	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「공		
	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		
	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		
	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		
	<u> </u>		
	공공기관을 고향사랑기부제 연		
	구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		
<u>②</u> (생 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		
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	<u>4</u>		
치단체의 장은 <u>제2항에</u> 따른	<u>제3항에</u>		

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수 있다.

<신 설>

제12조의2(민간플랫폼의 연계 활용 등) ① 행정안전부장관과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
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
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자격과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
단체의 플랫폼을 지정하여
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에 따라
민간서비스와 결합하거나 민간
서비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전
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
으로 연계하여 별도로 활용할수 있다.

- 1. 제2조제2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
- 2.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부금의 접수
- 3.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
- 4.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 랑 기부금 제도 홍보

- 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・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② 제1항에 따라 연계 활용되는 플랫폼의 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1.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・접
- 1.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・접

 수에 있어서 제4조부터 제8조

 까지에 따른 사항
- 2.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제공에 있어서 제9조에 따른사항
- ③ 제1항에 따라 연계 활용되는 플랫폼의 운영자는 기부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·남용 방지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계 활용되는 플랫폼 운영 현 황 및 플랫폼 운영자의 준수사 항 준수 여부,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・접수 및 답례품 지급 현 황 등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

제15조(지도·감독 등) ① · ② 제15조(지도·감독 등) ① · ② (생 략) <신 설>

<신 설>

-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받은 플 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그 밖에 플랫폼 연계 활용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장관이 정한다.
- (현행과 같음)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센터 의 업무를 지도 · 감독하며, 업 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플랫폼 운영자의 고 향사랑기부금 모금・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도 ・감독하며, 제12조의2제2항부 터 제5항까지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 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

<신 설>

제16조(위반사실 공표) ① (생략)

<신 설>

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, 절

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

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사·질 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 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 야 한다.

⑤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플랫폼 운영자가 제1 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 나 기부금의 접수 중지,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제16조(위반사실 공표) ① (현행

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제12조의2제1항 에 따른 민간플랫폼 운영자가 제15조제5항에 따라 기부금의 접수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 야 하며, 해당 조치를 받은 민 간플랫폼 운영자에게 그 사실 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-----

과 같음)

령으로 정한다. <<u>신</u> 설> -----.

- 제18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

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

 플랫폼으로 지정받은 자
 - 2. 제12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 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
 - 3. 제15조제5항에 따른 시정 명 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 한 자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